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 · 주의 요구

체 목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 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2014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현황

명칭	참여 농가수 (사업면적)	집단화 최소면적	사업예산(단위 : 천원)				주요사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75농가 (41ha)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64,578	45,204	19,374	-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 170만원/ha, ■ 준경관작물 : 10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15만원/ha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로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경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협약이행면적(파종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경관작물 재배관리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사업참여 배제 등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재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면적이 아닌 협약이행면적으로 지급단가를 산출하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 작물재배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¹⁾를 지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 ○○면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²⁾ 75농

1)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 경관작물 m²당 170원, 준경관작물 m²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작물재배 협약이행면적에 비례하여 m²당 15원

2) 협약기간 : 2014.5.16.~2015.5.15.(1년간)

가와 협약을 맺어 동계에 준경관작물(호밀 196,959m²)을 재배하였고, 하계는 경관작물(메밀 44,393m², 코스모스 87,657m²)과 준경관작물(수단그라스 67,346m²)을 재배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부당지급 및 경관작물 재배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축제 및 관광활성화 유도를 위해 한우암소 조형물과 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시 협약이행면적(396,355m²)이 아닌 신청면적(405,276m²)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마을대표(추진위원장) ○○○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동계 3,046,770원, 하계 3,032,360원 총 6,079,130원을 입금시켜 정상 지급액 보다 133,800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기간(2018. 2. 26.~3. 16.) 중 2016~2017년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표2]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협약면적 미이행 농가 현황”과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핵심사업인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에 대한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농가(5개 필지)에 대해선 다음 연도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시 사업면적 축소 또는 사업 참여를 배제시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Feed-Back(환류)되어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표2]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협약면적 미이행 농가 현황

(단위 : m², 원)

연도	신청자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파종 면적	개화 면적	지급 금액	비고	차년도 협약여부
	3명	5개필지	9,680	2,400	2,400	324,000		
2016	○○○	○○면 ○○리 000-0	1,684	1,200	1,200	120,000	동계	○
	○○○	○○면 ○○리 000-0	1,684	1,200	1,200	204,000	하계	○
2017	○○○	○○면 ○○리 000-00	64	-	-	-	동계	
	○○○	○○면 ○○리 000-0	845	-	-	-	동계	
	○○○	○○면 ○○리 000-00	106	-	-	-	동계	
	○○○	○○면 ○○리 000-0	2,116	-	-	-	동계	
	○○○	○○면 ○○리 000-00	64	-	-	-	하계	
	○○○	○○면 ○○리 000-0	845	-	-	-	하계	
	○○○	○○면 ○○리 000-00	106	-	-	-	하계	
	○○○	○○면 ○○리 000-0	2,116	-	-	-	하계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시정] 2014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지급에 대해 다시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부적정하게 추가 지급된 133,8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협약 체결한 경관작물 신청면적에 대해 식재 및 파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배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선 다음 연도 협약체결시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면적 축소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